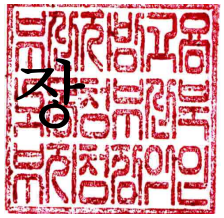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6-34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폐문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23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, 제20조5항, 제29조제1항제8호,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,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박0주	73.08.10	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02번길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① 유예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재참여신청서 미제출 ② 연락 두절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수취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6. 11. 23. ~ 2026. 12. 1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황윤주(전화 051-330-989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